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3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총괄 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3
(2) 총괄 의견	5
2. 주요 조문별 검토	8
(1) 총칙	8
(2)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	11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8일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음.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함.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 정신의 역사·문화적 평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이순신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 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총괄 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 우리 국민들은 통상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를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데, 남해에는 이순신 장군의 격전지가 위치해 있고, 이순신 장군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산발적으로 개최(첨부1 참고)하고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지역축제 등 기념사업이 보다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표기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해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보면, 제정안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명으로 3장 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제정안 주요 조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는 이순신해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2	안 제5조(이순신 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제1항)
3	안 제6조(이순신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이하 “이순신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이순신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4	안 제7조(이순신 기념사업추진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을 둔(제1항)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함(제2항) 추진단에 단장 1명과 과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과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함(제3항)
5	안 제8조(이순신 기념사업추진단장의 업무)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장은 기념사업과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1. 이순신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안 제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제2항)

(2) 총괄 의견

- 제정안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표기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등 그 입법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예컨대, 지역축제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지역축제는 9개 지역에서 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총 31개소로 조사되고 있음.

[표]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현황

연번	지 역		명 칭
1	충남	아산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2	경남	통영시	통영 한산대첩축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제전
4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제
5		창원시	진해군항제
6	전남	여수시	여수 거북선축제
7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축제
8		장흥군	회령포 문화축제

- 다만,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우선 ①명칭의 병행 표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수로기구(IHO) 등에 한반도 중심의 방위개념이 아닌 2천년 이상 7,700만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국제지도 일반규칙에 따라 “East Sea” 표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국제수로기구 구분상 동해 수역에 포함되며 국제표준명칭이 아님) 및 이순신해의 법제화는 동해 표기 관련 정부 논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사업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이순신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이순신기념사업 추진 및 추진단 설치 등과 관련하여, 조직 신설로 인한 국가기관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 및 부처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문화인물 기념사업’은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이므로 국가 예산 지원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영해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입법취지와 더불어 관계 부처(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동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순신기념

사업위원회 및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4년 7억 500만원, 2028년 6억 2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0억 6,600만원(연평균 6억 1,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110	—	—	—	—	110	22
이순신기념사업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28	28	28	28	28	138	28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안 제7조)	567	551	559	567	575	2,818	564
추가재정소요	705	579	586	594	602	3,066	613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뜻을 밝히고 있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남해”, “이순신해”, “이순신기념사업” 등 주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는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7′ 33.09″N, 126° 31′ 26.02″E)에서 225°로 그은 선과 고두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 24.66″N, 129° 10′ 54.51″E)에서 135°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 해역을 말한다.
2. “이순신해”는 남해와 전남 목포 고하도(북위 34° 46′ 동경 126° 22′)에서 남해의 서쪽 끝 경계 사이의 해역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되어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이순신기념사업”이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이순신해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에 대하여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시설과 기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 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념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1장 총칙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안 제1조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남해, 이순신해, 기본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형식임.

□ 제정법에 따라 표시한 남해와 이순신해의 해역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남해는 제주도 서쪽 파란선부터 대마도 오른쪽 파란선까지를, 이순신해는 ‘남해’와 전남 목포 고하도 남해의 서쪽 끝 경계 사이의 ‘서해 일부’를 포함한 빨간색 표시 구역에 해당함.

[표] 남해와 이순신해 구역



□ 이와 같은 명칭의 병행표기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구분상 남해는 동해 수역에 포함되며 또한 IHO 등에 한반도 중심의 방위개념이 아닌 2천년 이상 불려온 이름이자 7,700만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국제지도의 일반규칙에 따라 East Sea라 표기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표준 명칭이 아닌 남해와 이순신해 병행 표기를 법제화하는 것은 동해 관련 정부 논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2장(제5조) 및 제3장(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은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순신기념사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의 설치와 그 업무를, 안 제9조는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의 업무와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장 기념사업의 시행
제5조(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 목적 3. 기념사업의 거점지구의 위치 4. 기념사업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념사업의 추진 기구

제6조(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이하 “이순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순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순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관계 시·도지사

3.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순신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역사·문화·환경·해양·관광·휴양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기념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이순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이순신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순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①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추진단에 단장 1명과 과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과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장의 업무)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장은 기념사업과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순신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는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념사업의 통합적·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는 기념사업의 추진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참여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원활히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안 제7조는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제정안 각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문화인물 기념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었고, 이순신기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¹⁾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5조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이순신기념사업은 문화재 관리와 지역축제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그에 대한 통일적 관리는 국가유산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 관련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보면, 현충사관리소 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등이 있음(첨부2 참고).

□ 한편,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서는 안 제6조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²⁾ 안 제7조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관련하여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직제)으로 규정할 사항³⁾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 추진단을 두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무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의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578	589	601	613	625	3,005
기본경비	73	74	76	77	78	378
자산취득비	25	—	—	—	—	25
합계	676	663	676	690	703	3,408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 의 처

02)6788-5418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첨부1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및 기관·단체 현황

□ 지역축제 현황(9곳 8건)

○ (충남)아산시, (경남)통영시, 남해군, 거제시, 창원시, (전남)여수시,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연번	지 역		명 칭	시 기
1	충남	아산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4. 28 전후 (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자라고, 묻힌 곳 * 관련유적 : 현충사, 충무공묘소 * 주요행사 : 승전행렬 퍼레이드, 무과재연,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2		통영시	통영 한산대첩축제	8. 10~15 전후(양력)
			* 개최유래 : 임란 3대첩의 하나인 한산대첩 기념 * 관련유적 : 세병관(삼도수군통제영), 충렬사 * 주요행사 : 해군의장대시연, 한산대첩재현(레이저쇼), 해병퍼레이드	
3	경남	남해군	이순신 순국제전	10월 16일(음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전사한 노량해전을 기념 * 관련유적 : 이충무공전물유허, 이락사 * 주요행사 : 군선퍼레이드, 수군무예시연, 노량해전 재현, 불꽃놀이	
4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제	6월 중순(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처음 출전한 옥포해전 기념 * 관련유적 : 옥포대첩공원 * 주요행사 : 제례봉행, 해군군악대 공연, 풍어제, 민속놀이	
5		창원시	진해군항제	3월 말 ~ 4월 초(양력)
			* 개최유래 : 우리나라 최초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 개최 * 관련유적 : 진해 3대 해전지 * 주요행사 :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6		여수시	여수 거북선축제	5월 중
			* 개최유래 : 전라좌수영 위치, 1차 출전 기념 * 관련유적 : 진남관(전라좌수영), 충민사 * 주요행사 : 통제영길놀이, 봉수대봉화재현, 오관오포수군입성식	
7	전남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축제	9월 중
			* 개최유래 :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 후 첫 승전 * 관련유적 : 명량대첩비, 진도벽파진전첩비 * 주요행사 : 강강술래대회, 해군군악대 공연, 명량해전 재현	
8		장흥군	회령포 문화축제	9~10월 중(양력)
			* 개최유래 : 삼군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회령포 결의(취임식)을 다진 장소 * 관련유적 : 회령진성 * 주요행사 : 개막식 행사, 체험마당, 해상퍼레이드 등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내 '문화관광축제' 자료 기준

□ 기관·단체 현황(31개소)

○ 사당(15개소), 박물관·연구단체·기타(16개소)

구분	명 칭	주 소
사당	1 현충사 / 문화재청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2 충렬사 /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8-13
	3 유애사 / 유애사보존회	전북 정읍시 진산동
	4 충무사 /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5 충무사 / 완도군청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 금강사 /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7 충무사 /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 충무사 /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9 충민사 / 여주시청	전남 여주시 충민사길 52-21
	10 충렬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11 이락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2 충렬사 / (재)통영충렬사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
	13 착량요 / (재)통영충렬사	경남 통영시 당동
	14 제송당 / 경상남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15 송충사 /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박물관 연구소 기타	1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2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3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 충민사 유물관	전남 여주시 충민사길 52-21
	5 충무공이야기(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하 175
	6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6
	7 육군박물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사서함 77-1
	8 진남관 임란유물전시관	전남 여주시 동문로 11
	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인문과학관 6418호
	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전남 여주시 신월로 648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1 이순신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번길 5-4
	12 이순신리더십연구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102-1405
	13 반크 이순신 세계화 사이트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56 2층
	14 덕수이씨 대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7 삼미빌딩 4층
	15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3-19
	16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첨부2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사업추진현황

□ 현충사관리소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23
합 계	3,117	3,715	3,900	5,212	6,546
□ 일반회계	2,871	3,461	3,634	4,955	6,279
- 현충사유적관리	2,061	2,627	2,829	4,161	5,471
- 현충사기본경비(총액)	409	446	461	468	482
- 현충사기본경비	401	388	344	326	326
□ 문화재보호기금	246	254	266	257	267
- 궁능방재시스템구축	246	254	266	257	267

□ 문화재청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기준 (보조율)	지원내역	
			지원액	지원내용
20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782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진남관 등 5건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70/50	188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남해 총렬사, 통영 한산도 등 대상 재난방지시설 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57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50	240	'여수 문화재 야행(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 운영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50	1,000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소계		2,267	
2020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3,706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여수 진남관 등 7건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70/50	76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남해 총렬사, 통영 한산도 등 대상 재난방지시설 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62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40	176	'여수 문화재 야행(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 운영
	소계		4,020	
202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443	남해 총렬사 내삼문 보수정비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64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40	626	통영 문화재 야행, 여수 문화재 야행
	소계		1,133	
202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1,200	여수 진남관 보수정비 등 13건
	생생문화재사업	40	94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40	552	'통영 문화재 야행, 여수 문화재 야행
	소계		1,846	
202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2,105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진입로 정비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115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40	408	통영 문화재 야행, 여수 문화재 야행
	소계		2,628	